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

연번	신고 일시	신고방법	신고인		신고내용	처리결과			비 고 (접수자)
			성명	연락처		확인일시	조치사항	회신일시	
	26. 10. 12. 10:02	1588-5119	익 명		거제해역 일대, 연안자망2018청서호, 용마호, 해진호 등 수척이 2중자망을 초과부설하여 보리새우를 조업하고 있다며 단속 요청 *2018청서호·용마호·해진호, '거제 2중자망사용승인' 승인 확인	26. 10. 12. 11:50	- 10. 12. 11:50경 우리단 상황실 경유, 본 민원사항 접수 - 10. 12. 17:00경 민원해역 도착 후,민원인 특정 연안자망어선 4척 FIS 모니터링 감시활동 시작 - 10. 13. 07:00경 연안자망 용마호, 14:52경 2018청서호 조업동향 감지에 따라 고속단정 운영을 통한 조업선 5척 대상 승선조사 실시 - 점검결과, 민원인 제보 2중 이상 자망어구 초과 사용 불법조업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고 1척의 구명조끼 미착용 사유가 확인되어 단속함 - 상기 활동 결과를 10. 13. 15:47경 민원인에게 안내한 바 만족을표하고 민원 종결에 동의하여 상황종료함.	26. 10. 13. 15:47	무궁화7호